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2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 1 |
|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 1 |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 1 |
|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36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및 제도개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총 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음 달 20일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일몰 연장에 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그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은 추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남근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몰이 닥쳐서 현장 사업의 피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바로 턱밑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연장 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도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처에서 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처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대안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처에서 안을 가져올 때는 어떤 것들이 여야의 갈등 거리가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미리 조율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조금 전 저희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잘 통과시켰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무난하고 각각 위원들이 의견을 잘 개진해서 잘 통과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 한시법인데 어느 정도 연장을 해서 이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기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런 일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모든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정부가 여야 위원을 갈라친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안 논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기록에 남겨 두고자 발언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 국토법안소위가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중간 지점에서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맹성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몰 규정만 오늘 급하게 연장을 개정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기본적으로 일몰 규정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이게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개정돼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일몰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국토소위에서 바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도 복기왕 위원님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안소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고 계시고 저는 국회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의 모습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법의 일몰 기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저희가 들으면서 아니, 아무리 단순히 일몰 기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법안소위만 하더라도 1시간이 훨씬 넘게 이게 1년 3개월이 맞느냐, 3년이 맞느냐, 2년 3개월이 맞느냐 이 토론을 가지고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3일 전에 법안을 제출해서 제도개선을 포함한 일몰 기한 연장을 오늘까지 처리해 달라,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리 과정·절차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그 과정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일몰이 예견돼 있었는데 사전에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2월 20일 날 21대 국회에서 1차 개정안이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된 바가 있고, 그게 21대 때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임기 종료 관계로 폐기되었다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6월 달부터 사실은 여당하고 협의도 했던 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출된 게 8월 19일 날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유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말씀 안 나오시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과 내용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 주시면 다음번 법안소위든지 어디든지 간에 또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로……

○**염태영 위원** 실제로 오늘 뭐라고 그래도 여야는 나뉘어서 입장 개진을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중간 지점에서 절충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이제까지 법안소위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사정을 알고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봐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시한이 가까워 오는 것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 좀 전의 장관님 말씀은, 이번 공공주택법도 여당하고는 내밀하게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그와 관련된 교감을 한 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엊그제 알게 됐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것 외에도 10월 14일부로 용도변경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또 올해 말부로 숙박업 신고 특례 기간이 종료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련 법 또한 목전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거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 사다리의 가장 하부 구조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사안도 미리, 기한이 닥쳐 가지고 2~3일 전에 별안간 어떤 입장을 정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한 내용들을 여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일이 그 시한 안에서 너무 촉박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꼭 국토부에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제 제가 여야 위원님들께 8·8 대책 발표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국회 관계에 있어서의 소통 문제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약속의 선상에서 법안이든지 정책이든지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상의드리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로 더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일몰 시간에 쫓겨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데 내용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

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원활하게 법안이 다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일몰 연장된 내용의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음번 심사 기회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서 사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아니, 안 두들겼는데.

(웃음소리)

앉아 계세요. 아, 이제 안 두들기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30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서범수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근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주택도시설장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8)

이상 5건 8월 21일 회부됨